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8
----------	-----

2016년 2월 2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11월 26일, 신언근 의원(찬성자 12명)
- 나. 회부일자 : 2015년 11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6년 2월 25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언근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유 이외의 변상금 부과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일부를 삭제함.(안 제14조제3항)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의 임대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해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해당 위임규정이 없는 관계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① ~② <생략>	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설기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3.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삭제>

#### ■ 서울시 건설기계 보유 및 임대차현황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포장장비<sup>1)</sup>, 굴삭기, 도로보수차, 덤프트럭, 특수차<sup>2)</sup>, 화물차<sup>3)</sup>, 행정차량, 제설장비<sup>4)</sup> 등으로 2016년 상반기 기준 도로사업소별 보유현황은 아래

1) 파쇄기, 피니셔, 트레일러, 로더, 롤러

2) 고소작업차, 경정비차량, 조명차

3) 다목적트럭, 제설차, 고압흡입 청소차, 더블캡

4) 살포기, 삽날

[표]와 같으며,

[표] 서울시 도로사업소별 건설기계 보유현황(2016년)

구분	건설기계								제설장비		
	소계	포장 장비	굴삭기	도로 보수차	덤프 트럭	특수차	화물차	행정 차량	소계	살포기	삽날
동부	28	2	1	1	5	5	8	6	30	13	17
서부	31	4	1	1	5	6	9	5	36	15	21
남부	29	4	1	1	5	6	8	4	36	15	21
북부	36	7	1	1	5	9	8	5	29	12	17
성동	26	3	1	1	5	5	6	5	35	16	19
강서	29	6	1	1	4	5	7	5	30	14	16
계	179	26	6	6	29	36	46	30	196	85	111

- 최근 3년간(2013.1.~2016.1.) 건설장비 임대차현황을 살펴 보면 2013년 6건, 2015년 2건 총 8건으로 임대료 총 수입은 약 3백만원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음.
- 참고로, 조례 제7조에서는 임차인(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도로사업소장에게 건설기계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는 임대 시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조종사가 조종하도록 하고 있음.

## ■ 변상금 징수 조항 삭제안에 대한 의견(안 제14조제3항)

- 현행 조례 제14조제3항은 임차인이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사업소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sup>5)</sup>은 변상금 징수대상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임차해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비록 ‘망실 또는 훼손’이 있다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의 변상금 징수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22조<sup>6)</sup>에서 조례가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현행 조례의 건설기계 임차인에 대한 변상금 징수조항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짐.
- 다만,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민사적 측면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6)「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 서울시 도로사업소는 현행 변상금 규정 삭제로 인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 관련한 사항이 해당 조례에서 삭제되어도 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는데 문제없는지? (주찬식 위원)

답변) 문제없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임차인에 의해 발생한 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변상토록 할 예정임.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①~② &lt;생략&gt;</p> <p>③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1. 임차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2. 건설기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p> <p>3.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p>	<p>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①~② &lt;현행과 같음&gt;</p> <p>&lt;삭제&gt;</p>